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0. 29.(화) 11:00 < 10.29.(화) 석간 > 배포 2024. 10. 28.(월)

글로벌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해 민·관 역량 총결집

- 바이오 경제, 안보 등 국가 바이오 정책 결정,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 신설
- 레드, 그린, 화이트 등 바이오 전(全) 분야에 대해 국가 비전·방향성 제시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상임),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안덕근), **보건복지부**(장관 조규홍)는 「**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**(이하 대통령령)」이 **10월 29일**(화) **국무회의**에서 **의결**됨에 따라 **'국가바이오위원회' 구성을**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.

최근 **바이오**가 **보건·의료**뿐만 아니라, **경제·산업, 에너지·환경,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**에서 **미래**를 바꿀 **국면 전환 요소(게임체인저)**로 **부상**하고 있는 가운데, 미국, 유럽, 일본 등 **주요 선도국**은 **바이오 경제**로의 **전환**을 위한 **국가적 전략**을 **마련**하고, **바이오 기술** 및 **바이오 제조 발전**을 위한 정책적 **노력**을 **지속**하고 있다.

우리나라도 **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** 위해 **올해 4월** 「**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**」를 **발표**하였으며, **연구·산업·인력·규제·거버넌스 등의 측면**에서 국가 **바이오 생태계**의 **대전환**을 위한 혁신에 **민·관의 역량을 총결집**하고 있다.

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**대통령**이 **위원장**을 맡아 **민·관 역량**을 **하나**로 모으는 **범 국가적 위원회**를 설치·운영하기 위해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**, **산업통상자원부**, **보건복지부 3개 부처**가 **공동**으로 **마련**하였다.

국가바이오위원회(이하 위원회)는 **보건·의료, 식량, 자원, 에너지, 환경 등 바이오 全 분야**에 대해 **민·관 협력**을 통해 **비전·전략**을 **제시**하고, **바이오 경제, 바이오 안보** 등 **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**를 위한 **다양**한 **정책**을 **논의·결정**하는 **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**이다.

대통령령의 **주요 내용**으로는 **첫째,** 위원회는 **위원장**인 **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**을 포함하여 **40명 이내의 위원**으로 구성한다. **정부위원**은 기획재정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국무조정실, 식품의약품안전처, 특허청, 질병관리청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**관계부처 장관**(일부 처·청장 포함) 10명과 대통령실 **과학기술수석**(간사위원), **국가안보실 제3차장**으로 구성된다. **민간위원**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**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**한 사람으로서 **대통령이 위촉**하는 사람이 되며, **부위원장**은 **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**하는 사람이 된다. 위촉위원의 **임기는 2년**으로 한다.

둘째, **위원회는** ①**바이오** 관련 **주요 정책·제도**의 **수립·개선**, ②**바이오**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**규제**의 **검토·개선**, ③**바이오** 관련 **연구개발 전략** 및 **주요 사업 투자계획**의 **수립·조정**, ④**바이오안보 역량 강화**, ⑤**바이오 연구개발·산업 기반 확충**, ⑥**민관·공공 협력체계 구축** 및 **국제협력 지원**, ⑦**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**이 **실시**하는 **바이오** 관련 **사업** 간 **연계** 및 **기획**, ⑧**바이오** 관련 **대규모 사업**의 **사업계획 조정** 등에 대한 사항을 **심의**한다.

셋째, **위원회**의 **업무** 및 **운영 지원**을 위해 **위원회**에 **민간 전문가** 및 **관련 공무원**으로 구성된 **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**을 두도록 하였다.

정부는 "**국가바이오위원회**를 통해 **여러 부처**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**바이오** 관련 **정책** 간 **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**하여 **바이오 경제**로의 **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**에 **범국가적인 역량**이 **총 결집**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라며, "**위원회 구성**을 **신속히 마무리**하여 위원회 **출범식 및 1차 회의**를 **차질 없이 준비**할 계획이다"라고 밝혔다.

<붙임>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	책임자	부단장	박성원 (044-202-2915)
		담당자	사무관	김관호 (044-202-2916)
담당 부서 <공동>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	책임자	과 장	남혁모 (044-202-4550)
		담당자	사무관	황용준 (044-202-4556)
담당부서 <공동>	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정대 (044-203-4290)
		담당자	서기관	김혜원 (044-203-429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 임 「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
제1조(목적)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,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“바이오”란 생명 현상과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건·식량·환경·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기술·물질 등으로 산업화하려는 혁신활동 또는 그 과학기술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, 규제,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·제도의 수립 및 개선
2.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및 개선
3.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
4. 생물학적 위협 대응, 공급망 안정화, 전략기술 확보 등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
5. 전문인력 양성, 데이터베이스 구축·활용, 클러스터 조성·연계, 첨단 연구장비·시설 구축 등 바이오 연구개발·산업 기반의 확충
6.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·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
7.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
8.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(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)의 사업계획 조정
9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허청장, 질병관리청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
2.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
3. 국가안보실 제3차장
4.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

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**제8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·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바이오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전문적·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0조(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)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1. 대통령비서실의 바이오 분야 관련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
2.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(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)

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1조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
제12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,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, 분과위원회·특별위원회·협의체·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,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4조(존속기한)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